

2008. 6. 20(금) 10:00



1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06. 05
- 제출자 : 거창군수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06. 19(제1차 총무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8 - 17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아주보건진료소가 이전하여 개소함에 따라 아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총회의결을 통한 주민요구에 의해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관할지역명과 부합되게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아주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함(안 별표)
 - 아주보건진료소 ⇒ 하성보건진료소
 -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418-2번지
⇒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78-2번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진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보건진료소인 아주보건진료소가 응양면 신촌리에서 응양면 한기리로 신축이전 개소함에 따라 관할 지역 명에 부합되게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06. 05.
- 제출자 : 거창군수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06. 19(제1차 총무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8 - 20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군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생활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법률용어를 순화함(안 제6조·제7조·제9조)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기타 ⇒ 그 밖에
 - 승락서 ⇒ 승낙서
 - 허위 ⇒ 거짓
 - 손괴 ⇒ 손상
 - 때에는 ⇒ 경우에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 다만 이 조례의 개정 내용에서 1999. 9. 7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같은 날 제정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란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용어로 변경되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개정하지 않고 9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늦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08 - 22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 제안이유

2008. 7.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으로써 저소득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함.

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함(안 제1조·제3조·제4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월 10,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월 10,400원 미만으로 증액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추경시 예산 확보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를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하고, “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저소득계층” 을 “저소득계층” 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료” 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 로 하고, “월 10,000원” 을 “월 10,400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료” 를 “보험료”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료” 를 “보험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u>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u>	제명 <u>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별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저소득계층인 자에게 <u>국민건강보험료</u>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 ----- --- <u>저소득계층</u> ----- -- <u>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u> ----- ----- -----.
제3조 (지원 대상) ① <u>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u>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군지역 가입자이며 <u>건강보험료</u> 부과금액 기준 월 <u>10,000원</u> 미만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결손가정세대·장애인세대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u>국민건강보험료</u>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 <u>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u> (이하 “보험료” 라 한다)----- <u>보험료</u> ----- ----- <u>월 10,400원</u> ----- ----- -----. ② --- --- <u>보험료</u> ----- -----.
제4조 (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u>국민건강보험료</u>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4조(시기) ----- ----- ----- <u>보험료</u> ----- -----.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